

여행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폐업 사실을 확인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8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사업을 직권말소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직권말소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5. 1. 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제 목: 관광사업(여행업) 직권말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내용

공고내용	사업자등록 폐업 관광사업체(여행업) 등록사항 직권말소
처분내용	직권말소 (처분예정일: 2025. 2. 28.)
법적근거	「관광진흥법」 제8조 제9항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등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카지노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권말소 대상자			
업종	등록번호	상호(대표자)	영업장소제지
종합여행업	26004-2018-11	(주)투어맵코리아	서대문구 서소문로 37, 충정로대우디오빌 1330호 (합동)

3. 공고기간: 2025. 1. 20. ~ 2025. 2. 3. (14일간)

4. 공고방법: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의견제출 안내

가. 당사자 등이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예정대로 행정처분(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

-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5층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02)330-1649, 팩스 02)330-1430, E-mail bkmin1235@sdm.go.kr